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3401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 11. 선고 2021구단5619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 2019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2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6

별지1.

이 사건 처분 및 정당세액 계산

(단위: ㎡, 원)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취소세액
과세면적	8,835.9	8,358.4	477.5
개별공시지가	48,300,000	48,300,000	
과세표준	298,741,779,000	282,597,504,000	16,144,275,000
재산세	1,193,767,110	1,129,190,010	64,577,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418,238,490	395,636,500	22,601,990
지방교육세	238,753,420	225,838,000	12,915,420
세액 합계	1,850,759,020	1,750,664,510	100,094,510